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과거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으나, 국가하천에 비해 지방하천의 수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하천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수계내 하천간의 기본계획 수립시기, 수립주체 등이 서로 상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추진시 협의 · 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본 과업은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1.2.1 추진경위 및 계획

○ 2021. 04~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2021.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2.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2]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하천기본계획 수립근거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하천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를 수립하여야 함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제25조 (하천기본계획)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교통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 · 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Ⅰ권역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지방하천 6개소(과업연장 109.37㎞)

다. 규 모

수행공정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하천명	과업연장(㎞)
금강공주+금강하구언Ⅰ권역	석성천, 은산천, 금천, 구룡천, 산북천, 길산천(6개소)	109.37

라. 계획수립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마. 승인기관 : 충청남도(석성천, 은산천, 금천, 구룡천, 길산천), 전라북도(산북천)

바. 계획수립기간 : 2020 ~ 2022년

사. 계획내용

1) 계획의 범위

○ 금회 대상하천은 금강공주+금강하구언Ⅰ권역으로 총 6개 하천, 109.37㎞임

〈표 1.4-1〉 과업대상 하천 현황

권역	하천명	위 치		과업연장(㎞)
		시점	종점	
금강공주+금강하구언Ⅰ권역	석성천	충남 공주시 탄천면 복룡·광명·신영리계	충남 부여군 석성면 금강(국가) 합류점	21.82
	은산천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186지번지선 수로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강(국가) 합류점	14.65
	금 천	충남 부여군 옥산면 봉산·홍연리계	충남 부여군 장암면 금강(국가) 합류점	18.76
	구룡천	충남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 217,264전번지선 수로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천(지방) 합류점	18.22
	산북천	전북 익산시 금마면 낭산저수지 방수로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금강(국가) 합류점	16.19
	길산천	충남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은곡소하천 종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국가) 합류점	19.73
	소 계	지방하천 6개소		109.37

하천명	유역면적 (km²)	하천연장 (km)
합 계	645.10	109.37
석성천	147.54	21.82
은산천	61.64	14.65
금 천	164.82	18.76
구룡천	59.36	18.22
산북천	104.34	16.19
길산천	107.40	19.73

(그림 1.4-1) 위치도

2) 하천기본계획 내용

가) 치수, 이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기본계획수립

○ 하천 치수상의 안정성 확보 및 하천 본래의 생태적 환경 고려

○ 생태환경 고려한 사면보호, 유지유량 확보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조성

○ 치수 및 이수기능, 환경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조성

나) 홍수량, 홍수위, 하폭, 하천구역, 홍수방어계획빈도 결정

○ 하천의 계획홍수량을 고려한 횡단계획 수립

○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홍수방어계획 수립

○ 가용 가능한 하천부지 활용 및 주민 사유권침해 최소화 계획 수립

다) 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 폐천부지 및 유휴지를 이용하여 본래 하천공간복원 계획 수립

○ 하천의 생태기능 보존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부속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조화로운 하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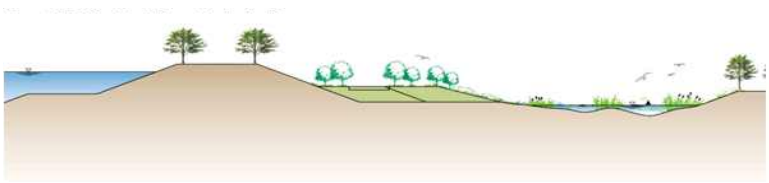
안전한 하천관리		
바람직한 하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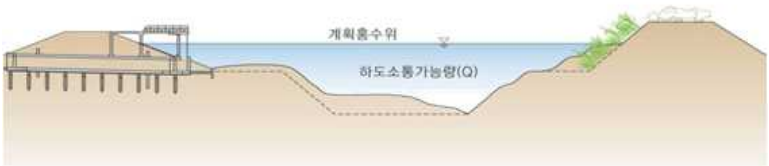

3) 유형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방향

구분	산지 하천	농경지 하천	도시 하천
정비 방향	· 사방댐 설치 · 안정하상 계획 · 횡단구조물의 충분한 통수능력과 공간확보	· 직강화 지양 · 하천공간 복원(홍수터, 천변저류지, 습지 등)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공법 도입	· 하천공간 복원(천변 저류지) · 생태환경적이며 안전한 호안 공법 도입 · 자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수시설 도입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을 공간범위로 설정하였음

- 공간범위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및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2.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해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을 참고하여 설정함

〈표 2.1-1〉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계획하천 및 지자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 범위 설정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의 변화예상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예상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 산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근·중·원경별 경관변화예상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하천정비시 기상, 대기질 변화 영향예상지역 ○하천정비시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소음·진동 등 영향예상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공급 필요성 예상지역	○계획하천 및 지자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시행시 폐자원 발생 및 온실가스 변화 예상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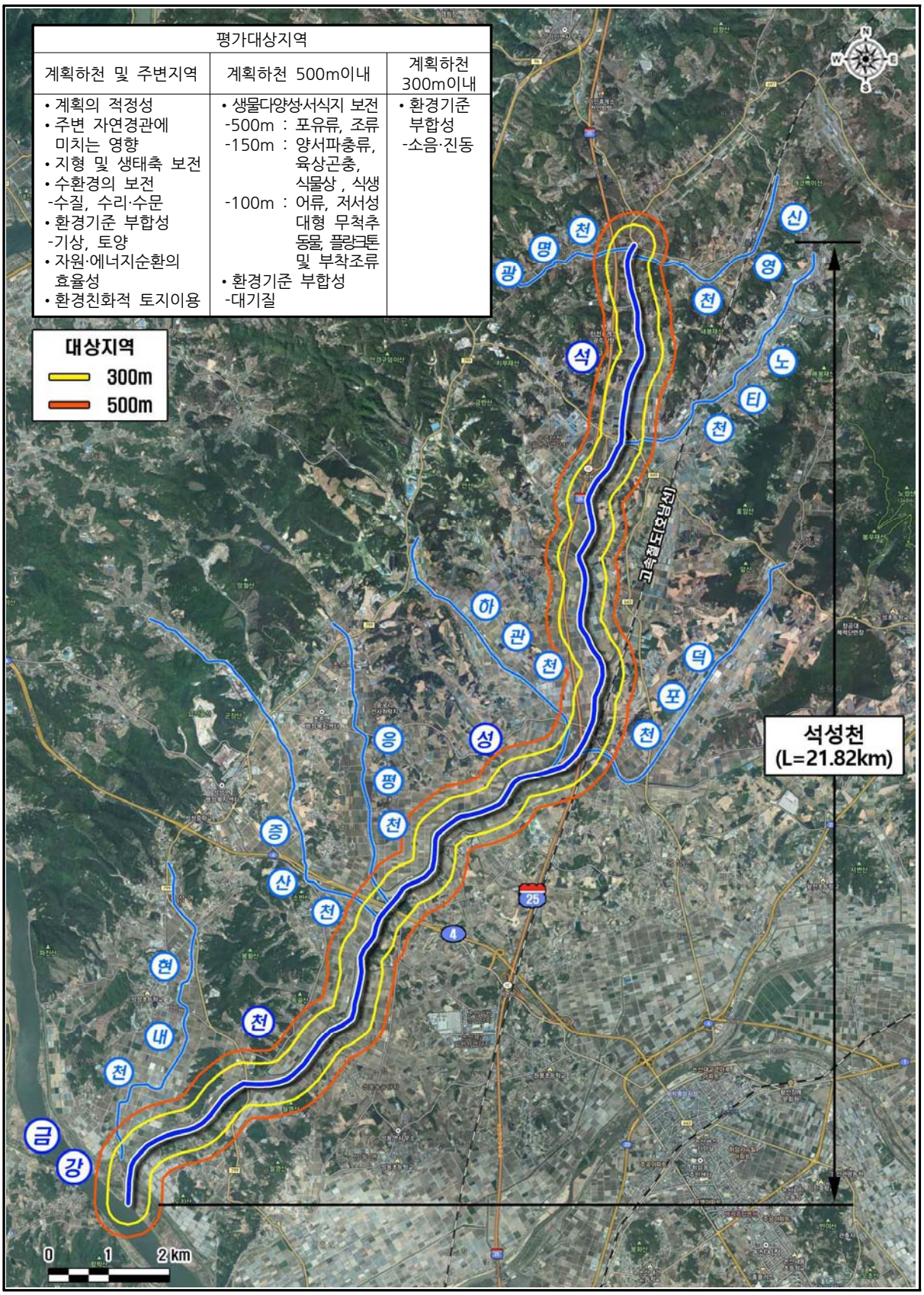

(그림 2.1-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석성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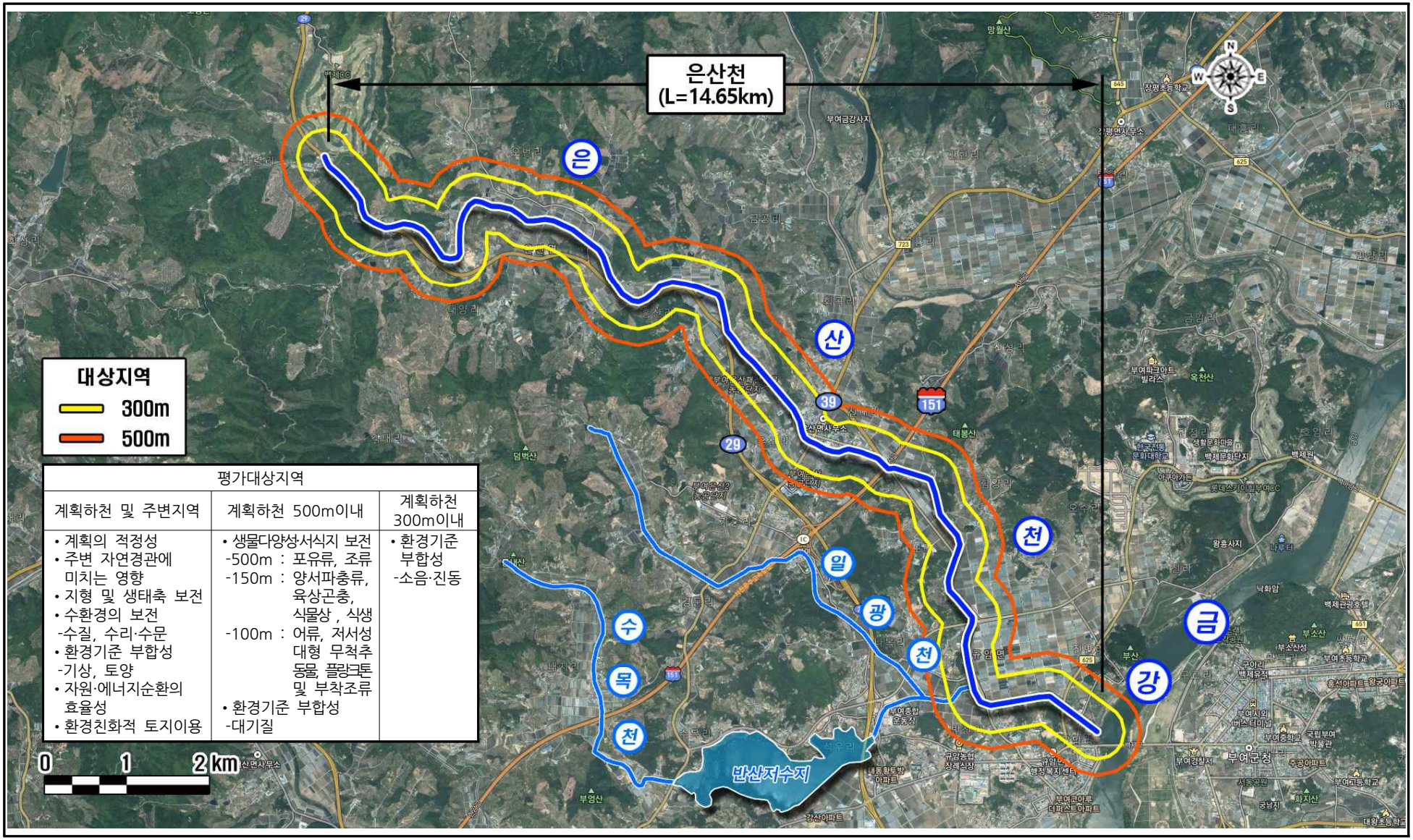

평가대상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하천 500m이내	계획하천 300m이내
• 계획의 적정성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토양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500m : 포유류, 조류 -150m :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식물상 , 식생 -100m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그림 2.1-2)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은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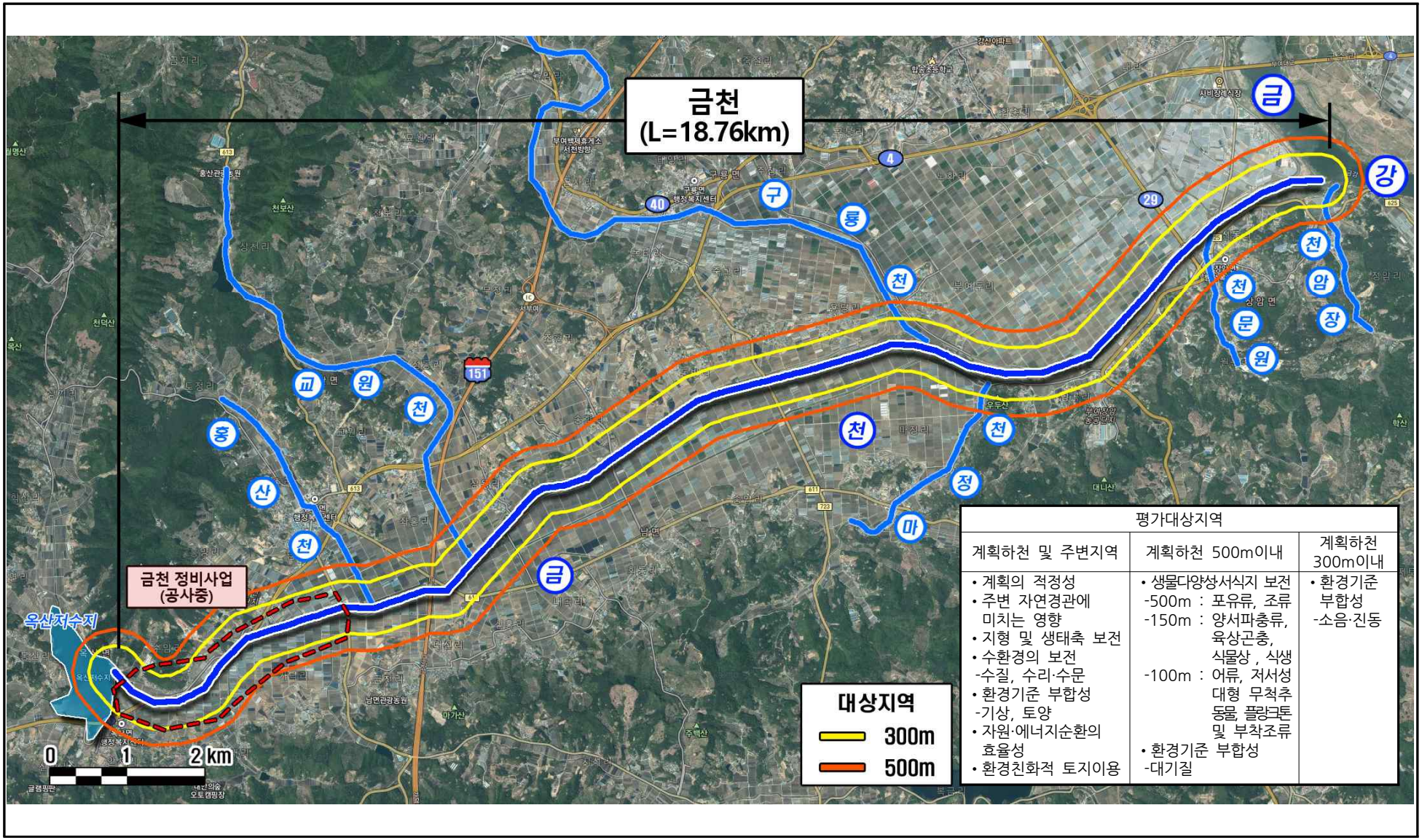

(그림 2.1-3)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금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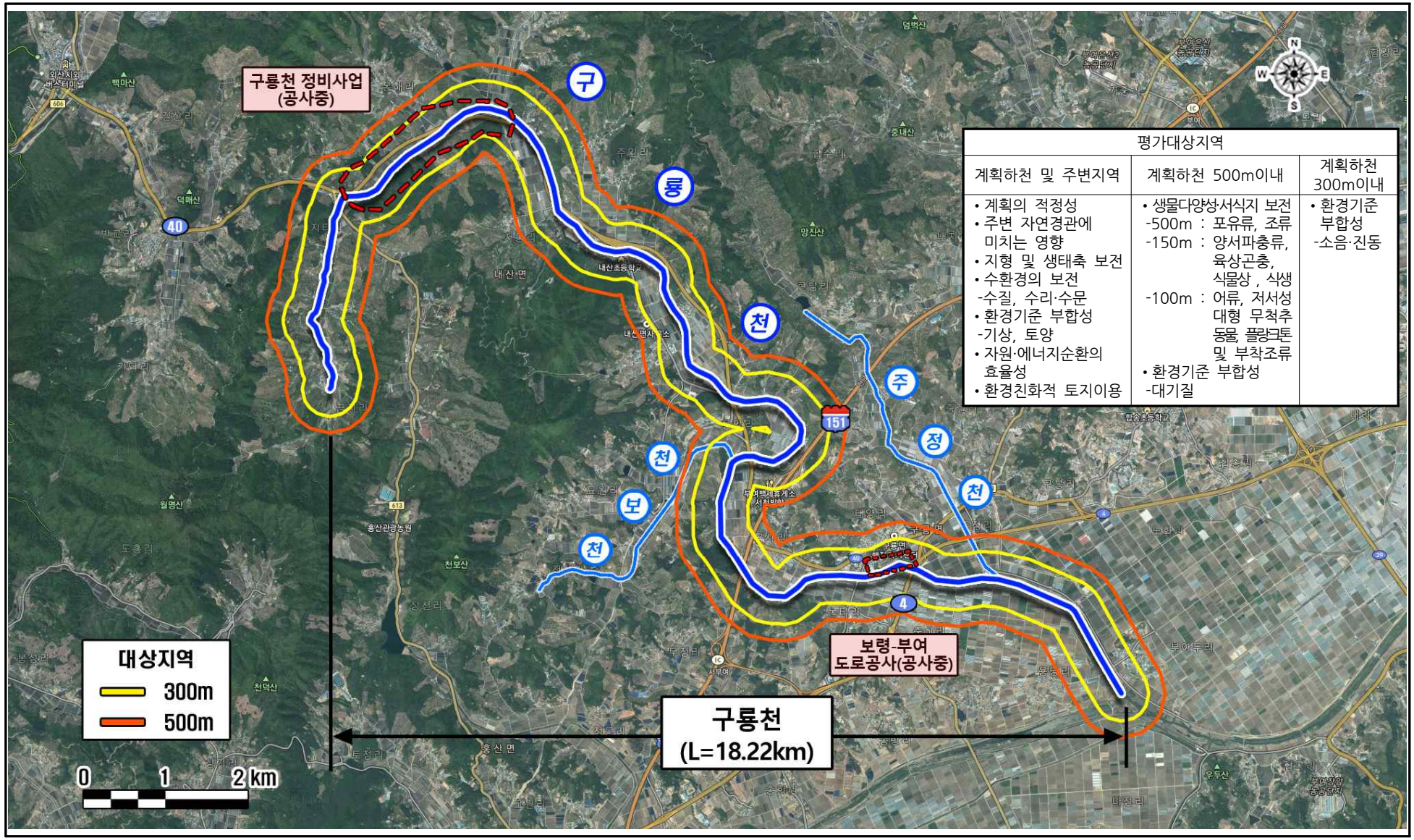

(그림 2.1-4)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구룡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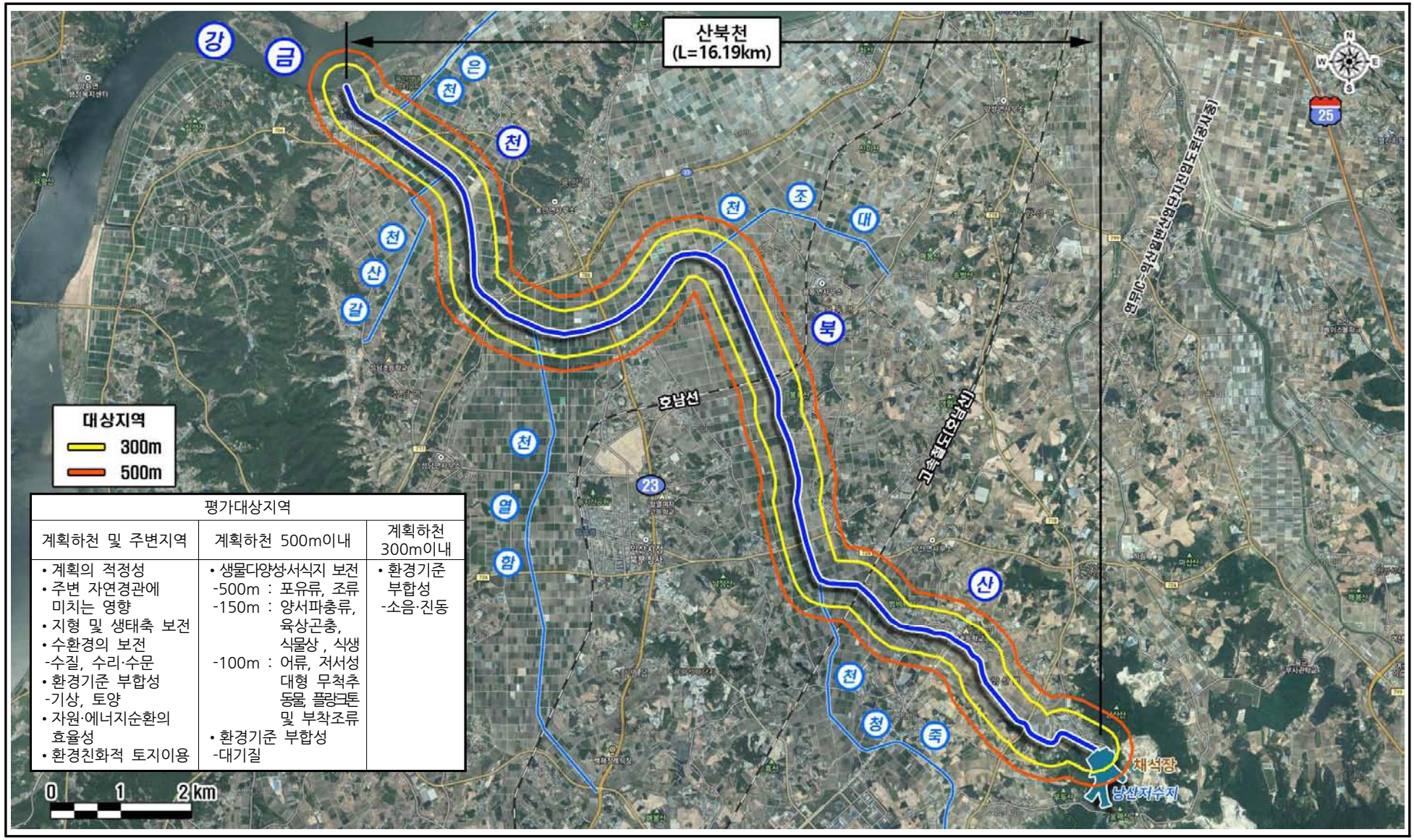

평가대상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하천 500m이내	계획하천 300m이내
• 계획의 적정성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토양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500m : 포유류, 조류 -150m :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식물상 , 식생 -100m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그림 2.1-5)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산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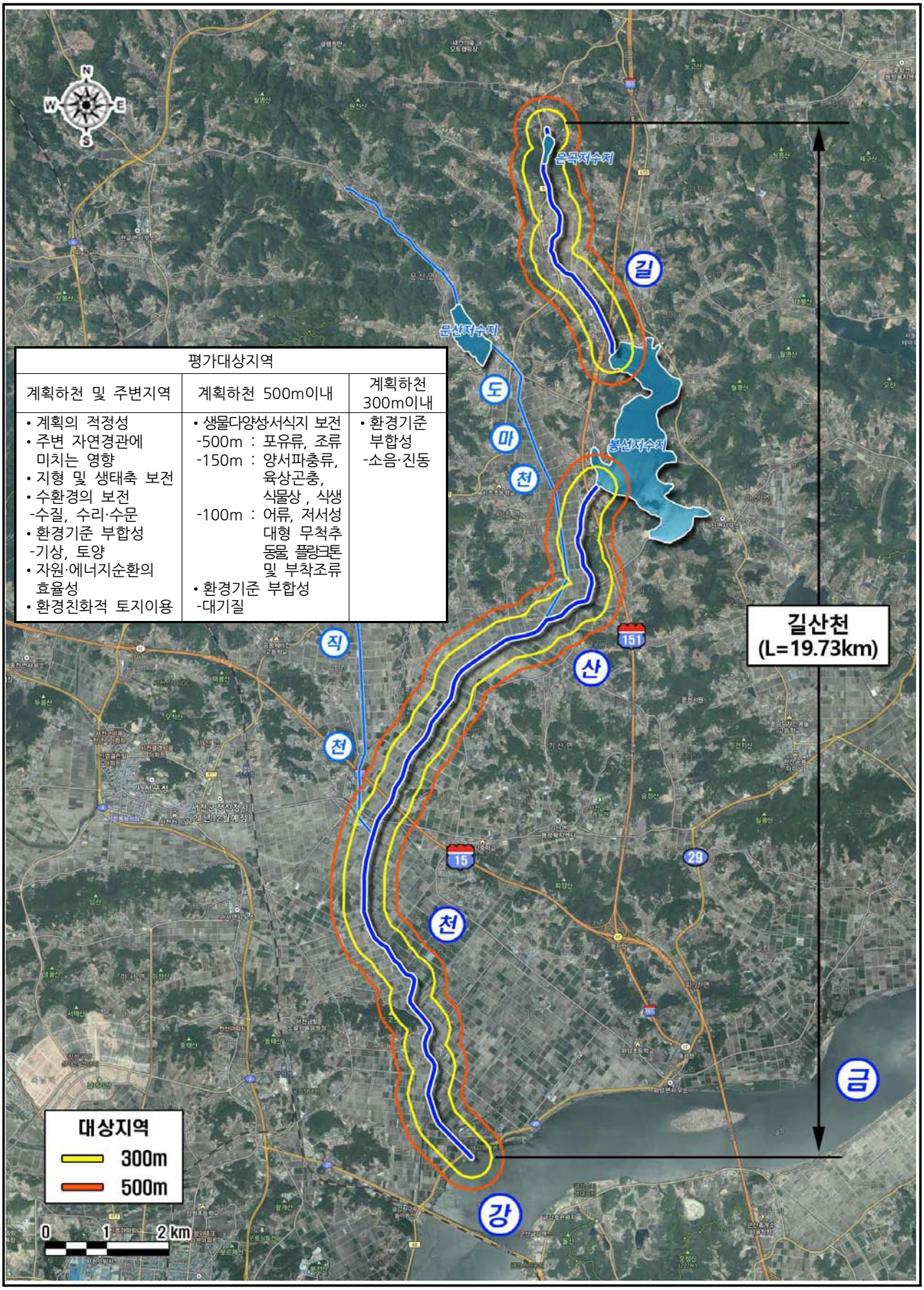

평가대상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하천 500m이내	계획하천 300m이내
• 계획의 적정성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토양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500m : 포유류, 조류 -150m :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식물상 , 식생 -100m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그림 2.1-6)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길산천)

2.2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

가.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종류 및 성격, 입지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및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2.2.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검토항목	환경영향요소	영향수준
검토항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 · 분석의 적정성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일관정도 ○ 계획 수립 전 · 후의 영향 정도	+++ +++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동 · 식물 영향 - 지형변화 및 생태축 영향 - 경관 저해 및 훼손 정도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의 영향 여부	+++ ++ ++ +++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 ·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수립시 환경기준의 유지 · 달성 여부 - 환경기초시설 필요성 여부 - 자원,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 여부	+++ + +
		○ 사회 ·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친환경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주) 환경영향요소에 중요정도에 따라 “+” : 영향미미, “++” : 영향보통, “+++” : 영향높음 등으로 구분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의 설정은 본 계획의 특성 파악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계획하천과 주변 지역의 특성을 파악 후, 계획의 시행 시 영향이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별 항목 및 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설정하였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요도가 큰 항목에 관하여는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2.1-2〉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사유
				중점	현황	제외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	○계획의 비교 측면에서 대안 비교·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변화여부 ○공사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 여부 검토 ○표고 및 경사 분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상 등
		수환경의 보전		○	-	-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계영향 및 대책수립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수질오염총량 대상지역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	○계획하천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대기질	○	-	-	○계획하천 주변환경을 고려한 대기질 현황 파악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영향
			악취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토양	○	-	-	○계획하천 공사 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등
			소음·진동	○	-	-	○계획시행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
			일조장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분뇨 및 생활, 건설, 지정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	-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예상
		인구 및 주거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산업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2.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조사 · 예측 · 평가 방법 설정

○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2.2.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 예측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하천	○문헌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하천	○문헌조사 ○계획의 비교측면에서 설정된 대안을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하천 및 경계로부터 500m 이내 -500m:포유류, 조류 -150m: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식물상 및 식생 -100m: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수립 범위를 고려하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현황 및 서식환경을 파악하고 생태계 영향을 예측 - 보전·보호 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백두대간 등) 및 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조사 및 평가범위 포함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계획내용을 토대로 지형변화 및 생태축 변화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하천환경정비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영향 검토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 및 지류하천 ○현황조사 -지표수질 : 56지점 -하천저질 : 56지점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수질모델링 ○하천정비로 인한 토사유출 등 부유물질이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검토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위 등 변화 -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예측 ○수질오염총량지역 내 오염부하량 예측 및 장래수질 예측

〈표 2.2.2-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 예측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 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 계획하천 및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대기오염영향 예측 및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토양	○ 계획하천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소음·진동	○ 계획하천 및 경계로부터 300m 이내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및 환경기준 등과 비교·평가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하천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폐기물 처리 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과 에너지 순환성 검토
			온실가스	○ 계획하천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량 변화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하천	○ 문헌조사 ○ 하천정비에 의한 토지이용변화 예측·분석

2.2.3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가. 조사목적

○ 환경질 조사는 계획하천 및 지류하천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조사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조사계획

○ 환경질 조사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하천, 지류하천,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조사지점 선정기준
  - 본류 기준 2~3km 당 1지점, 시·종점 당 1개
  - 지류하천 중 규모가 큰 하천의 합류 전 지점, 지류하천 합류 후 본류 지점 (장래수질 예측 시 Point-source로 반영)

〈표 2.2.3-1〉 조사항목 및 지점

하천명	조사지점	조사회수	조사수량	조사항목	
				지표수질	하천저질
석성천	10	2회	20	유량, 수온, pH, BOD, COD, SS, DO, T-P, 총대장균군, Cd, As, CN, Hg, PCB, Pb, Cr^{6+}, ABS, T-N, Chl-a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화물(황화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은산천	9	2회	18		
금 천	9	2회	18		
구룡천	10	2회	20		
산북천	8	2회	16		
길산천	10	2회	20		
계	56	-	112	총 19항목	총 13항목

주) 조사시기는 갈수기, 평수기를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

〈표 2.2.3-2〉 조사지점별 위치

하천명	조사지점명	주 소	비 고
석성천	석-1	(무명교)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167-1 인근	(본류)
	석-2	(고수부지)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567 인근	(본류)
	석-3	(비당교)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930-5 인근	(지류-증산천)
	석-4	(응평2교)충남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720 인근	(지류-응평천)
	석-5	(무명교)충남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777 인근	(본류)
	석-6	(소사교)충남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786-4 인근	(지류-하관천)
	석-7	(무명교)충남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696-2 인근	(지류-덕포천)
	석-8	(화정교)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559-3 인근	(본류)
	석-9	(장안교)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4-1 인근	(본류)
	석-10	(복룡교)충남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707 인근	(본류)
은산천	은-1	(라복교)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9-7 인근	(본류)
	은-2	(고수부지)충남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153-3 인근	(지류-일광천)
	은-3	(무명교)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 109-3 인근	(본류)
	은-4	(무명교)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 170-1 인근	(본류)
	은-5	(은산교)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60-2 인근	(본류)
	은-6	(하홍교)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51-4 인근	(본류)
	은-7	(상홍교)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485-1 인근	(본류)
	은-8	(대양교)충남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356 인근	(본류)
	은-9	(무명교)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288-3 인근	(본류)
금 천	금-1	(무명교)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312-5 인근	(본류)
	금-2	(무명교)충남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641-3 인근	(본류)
	금-3	(무명교)충남 부여군 남면 마정리 71-10 인근	(지류-마정천)
	금-4	(고수부지)충남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 127-8 인근	(본류)
	금-5	(무명교)충남 부여군 남면 송학리 265 인근	(본류)
	금-6	(시내취입보)충남 부여군 남면 삼용리 606-1 인근	(지류-교원천)
	금-7	(무명교)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433-1 인근	(지류-홍산천)
	금-8	(신서교)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417-9 인근	(본류-가교)
	금-9	(수암교(구))충남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226-3 인근	(본류)

〈표 2.2.3-2 계속〉 조사지점별 위치

하천명	조사지점명	주 소	비 고
구룡천	구-1	(부두교)충남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 70-3 인근	(본류)
	구-2	(보)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47 인근	(본류)
	구-3	(무명교)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129-3 인근	(지류-주정천)
	구-4	(논티교)충남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 178-3 인근	(본류)
	구-5	(무명교)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44-1 인근	(본류)
	구-6	(무명교)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527-6 인근	(지류-천보천)
	구-7	(무명교)충남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206 인근	(본류)
	구-8	(녹간교)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9-2 인근	(본류)
	구-9	(지티교)충남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562-10 인근	(본류)
	구-10	(무명교)충남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 210 인근	(본류)
산북천	산-1	(인도교)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62 인근	(본류)
	산-2	(연동교)전북 익산시 성당면 부곡리 47-2 인근	(본류)
	산-3	(무명교)전북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417-23 인근	(지류-함열천)
	산-4	(교향교)전북 익산시 용안면 창리 706-9 인근	(본류)
	산-5	(화실교)전북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368-20 인근	(본류)
	산-6	(무명교)전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780-13 인근	(지류-죽정천)
	산-7	(명천교)전북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1648 인근	(본류)
	산-8	(무명교)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342-10 인근	(본류)
길산천	길-1	(망원1교)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09-12 인근	(본류)
	길-2	(장신교)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포리 117-1 인근	(본류)
	길-3	(무명교)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907 인근	(본류)
	길-4	(무명교)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406-2 인근	(지류-직천)
	길-5	(무명교)충남 서천군 기산면 산정리 523-14 인근	(본류)
	길-6	(무명교)충남 서천군 시초면 신흥리 90-9 인근	(본류)
	길-7	(용곡교)충남 서천군 시초면 용곡리 92-17 인근	(지류-도마천)
	길-8	(봉선교)충남 서천군 시초면 태성리 289-2 인근	(본류)
	길-9	(무명교)충남 서천군 시초면 후암리 178-2 인근	(본류)
	길-10	(무명교)충남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429-1 인근	(본류)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경위

○ 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다.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주민설명회 계획을 포함하여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마다 공람장소를 1개소씩 설치하고,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계획임
- 주민은 공람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 ·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 · 군 ·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 · 군 · 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지자체 협조 하에 현수막 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

3.2 의견수렴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의견 수렴결과 공개 :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계시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요건 :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 4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주관부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심의기간 : 2021년 04월 28일 ~ 06월 08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금강공주+금강하구언Ⅰ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구 분	연 번	소속기관	성 명	직 책	비 고
위원장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박○○	국 장	계획수립기관
위원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	소속공무원	계획수립기관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	연구원	민간전문가 (위원장 위촉)
	4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주무관	협의기관
	5	충남연구원	오○○	연구원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위촉)
	6	전북지방환경청	전○○	주무관	협의기관
	7	전북지방환경청 자문단	손○○	자문단(교수)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위촉)
	8	충청남도	김○○	환경협력교육팀장	지자체
	9	전라북도	채○○	자연환경팀장	
	10	충청남도 공주시	심○○	하천계획팀장	
	11	충청남도 논산시	김○○	환경관리팀장	
	12	충청남도 부여군	노 ○	하천관리팀장	
	13	충청남도 서천군	장○○	수질관리팀장	
	14	전라북도 익산시	송○○	환경관리과장	
	15	전라북도 군산시	차○○	환경정책과장	
	16	공주시 주민대표	김○○	-	지자체 주민대표
	17	논산시 주민대표	유 ○		
	18	부여군 주민대표	심○○		
	19	서천군 주민대표	노○○		
	20	익산시 주민대표	김○○		
	21	군산시 주민대표	최○○		
	2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박○○	사무처장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23	환경운동연합 군산지회	남○○	위원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계획하천 및 주변 공사현황을 반영하여 대상지역을 설정 필요
○ 주민설명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 필요
○ 현재 공사중인 하천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을 포함한 영향범위 설정 필요 (금천, 구룡천, 길산천 하천정비사업 등)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방하천을 권역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정한 주민설명회 계획 수립 필요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5. 14.

심의위원 이

국민체감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KEI

KEI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회신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관리과-1366(2021.04.27) 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붙임 :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1부. 끝.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장

담당	실장	2021.5.7. 본부장	전결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본부-9678 (2021. 5. 7.) 접수 건설관리과-1478 (2021. 5. 7.)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 / www.kei.re.kr

전화번호 044-415-7471 팩스번호 / ymkim@kei.re.kr / 대국민 공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및 서천군에 위치하는 지방하천 6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총 109.37km)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석성천(L=21.82km), 은산천(L=14.65km), 금천(L=18.76km), 구룡천(L=18.22km), 산북천(L=16.19km), 길산천(L=19.73km)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하천별 계획 수립 시기, 수립 주체 조정, 일관성 있는 수리·수문량의 검토 등을 사유로 6개 하천을 고려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생태적 측면에서는 지방하천으로써 각각의 하천별 고유한 특성을 하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실시하게되므로 충분한 환경적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음. 이에 각 하천별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각각의 하천 고유의 특성이 평가서 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및 서천군에 위치하는 지방하천 6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총 109.37km)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석성천(L=21.82km), 은산천(L=14.65km), 금천(L=18.76km), 구룡천(L=18.22km), 산북천(L=16.19km), 길산천(L=19.73km)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하천별 계획 수립 시기, 수립 주체 조정, 일관성 있는 수리·수문량의 검토 등을 사유로 6개 하천을 고려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생태적 측면에서는 지방하천으로써 각각의 하천별 고유한 특성을 하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실시하게되므로 충분한 환경적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음. 이에 각 하천별 생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각각의 하천 고유의 특성이 평가서 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자연환경 관련 보호대상 중 지형·지질과 관련된 대상의 지정 현황, 또한 계획부지 주변에 학술적·문화적·관광적·역사적 또는 자연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을 조사

○ 기상 및 대기질: 본 사업이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2021. 5. 14.

심의위원 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판뉴딜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의견서 회신[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04.27.)호와 관련하여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구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

금강유역환경청장

주무관 김 과장 전결 2021. 5. 12 조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3686 접수 건설관리과-1523 (2021. 5. 12.)
우 352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3층 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gg/
전화번호 042-865-0755 팩스번호 042-865-0759 / ijokkan@me.go.kr / 비공개(5.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견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여야 함

- 대상 지역 설정 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하천별 주변 현황을 도면(실측도, 항공사진 등)에 표기
- 하천정비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구간을 명시하고(예: 금천·구룡천 정비사업, 준비서 19~20쪽) 관련 내용을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단순 비교가 아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대안별로 환경적 측면을 비교·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의 이·치수 능력 확보 대안(하폭확대, 하천제방, 하도정비 등)을 계획 구간별로 상세히 비교
- 호안, 보 및 낙차공 등 횡적시설물의 환경적 기능과 재해예방적 기능을 객관적(수치적)으로 비교하고, 대안(철거, 재설치 등)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구간별 환경적,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 현황을 자세히 조사·제시하고,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별표2](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를 참조하여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동절기 조사 지양)에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조사
-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에 속하는 구간과 1등급으로 지정된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수질 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권역별 목표수질과 연계한 수질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해 지점을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
- 사업지구의 경관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중·원경별로 가시권 분석을 시행하고, 충분한 수의 조망점을 선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공람 및 설명회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 문자발송 등 다각적 안내
- 공람 장소는 대상 지역 내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수치, 조사 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 요약서(사진, 그림, 수치비교 등)를 작성·제공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평가서 작성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 등을 활용하는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2021. 5. 12.

심의위원 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판뉴딜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회신[금강공주, 금강하구언 Ⅰ권역 하천기본계획]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4.27.)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심의 요청한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Ⅰ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심의의견서 1부. 끝.

전북지방환경청장

주무관 홍 과장 전결2021.5.17. 전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2029 접수 건설관리과-1555 (2021. 5. 17.)

주 5487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전로 120 (중동)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 http://me.go.kr/amg

전화번호 063-238-8882 팩스번호 063-238-8879 / c660410@me.go.kr / 비공개(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Ⅰ권역 하천기본계획]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Ⅰ권역(L=109.37㎞)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치수기능 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하천 건강성을 회복·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금강공주, 금강하구언 Ⅰ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바, 하천을 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구간별로 면밀한 현황 조사 및 환경영향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하천 및 인근 정온시설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하천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반영
- 특히,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백두대간 등 보전·보호 구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조사 및 평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여야 하며,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도면 포함)하여야 함

3. 대 안

○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

-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가 아닌 하천개수 외 재해방지 및 치수를 위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홍수방어대책 등)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대안 비교·검토하여야 함

○ 하상훼손 및 시설물 설치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작성

- '입지의 타당성'의 최하위 항목은 중점 10개, 일반 3개, 제외 8개로 조정
  - ▸ 중점평가항목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토지이용
  - ▸ 일반평가항목 : 기상, 온실가스, 토양
  - ▸ 제외항목 : 악취, 위생·공중보건, 해양환경, 인구, 주거, 산업, 전파장해, 일조장해

○ 평가범위

- 선정된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를 설정하되,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평가범위를 확대
- 특히, 동·식물상 조사는 자연 식생이 발달된 산림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 생물서식지 파악 등 구체적·중점적으로 실시
- 기상, 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관련 조사시기·지점·항목 및 횟수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선정

○ 평가방법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검토하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항 목		의 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o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 - 합류하천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하천 상·하류간 자연스러운 연계가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o 기존 제방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침수피해 현황, 지형·지질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검토·제시 - 일률적인 개수계획을 지양하고, 하폭확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o 과업하천(합류되는 하류수계 포함)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조사(생육이 활발한 시기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 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 사업지역 내 위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별도관리지역 등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제시 - 수변식생군락 등 계획구간 내 보전이 필요한 구간의 구체적인 현황 제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o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정비계획 구간과 주변 경관영향 분석(주요 조망점에서 사업시행 전·후 비교) 및 저감방안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o 하천유역의 수질오염원 분포, 오염원 관리현황 및 관련계획을 조사(현지조사)하고, 이와 연계한 하천 내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 o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 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
		o 축제, 호안정비 등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거 홍수이력 등의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o 보, 교량 등 정비계획(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친환경적 생태공법 적용 - 기존 보 및 낙차공, 교량 설치현황(현장사진 포함)과 존치 및 제거설(신설) 여부, 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 - 생태계 단절을 막고 다양한 수변식물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호안공법 검토 -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상과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 o 수질 및 관련 수질관리계획(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목표수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관리계획 제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o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분포현황에 따라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 선정평가 및 저감방안 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o 하천공간(보전·복원·친수지구)의 구분은 계획하천의 생태적 환경 및 수질·수리적 특성, 하천 주변 토지이용 현황(농경지, 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친수지구 조성에 따른 타당성 및 관련계획 등 구체적인 사유 제시 o 과업하천 및 주변지역 토지현황 조사(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등)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직 위 :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성 명 :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환경현황분석, 예측, 저감방안 검토를 통하여 본 계획 내 사업이 실현되었을 경우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환경·생태 민감지역 및 중요지역의 경우 대안 적극 검토 필요)*

○ 각종 국가 상위계획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전라북도(익산시, 군산시) 내에서 최근 수립된 다양한 환경, 생태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평가준비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특히,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석성천의 경우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 생태축의 완충구역 연접지역에 해당하므로, 석성천의 하천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뿐만 아니라 주변 산림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식지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이의 단절을 최소할 수 있는 등의 방안 강구가 필요함

○ 또한, 비오톱 1등급 지역(해당 시·군 비오톱지도 자료 참조 필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지역의 경우 향후 하천정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광역 생태네트워크 생태축]

2. 토지이용구상안

○ 별도 의견 없음

3. 대안

○ 대안 설정 및 대안의 비교·분석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생태계 훼손 가능성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호안공법 설정에 따라 횡적 연결성 부분에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부문별 환경질조사(현장조사)의 경우 각 조사 분야에 따라 조사지점, 조사 시기(계절), 횟수, 항목 등의 적정한 선정에 따라 평가의 질이 결정될 수 있음. 본 준비서의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음. 다만 조사시기(계절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출현을 많이 하는 시기에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예_조류 : 겨울철새 반드시 포함하여 2회, 포유류 : 늦가을 또는 이른 봄, 어류 : 산란시기 등)
- 지표수질의 경우 2회 측정을 갈수기, 평수기를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량은 가능한 경우 수질 및 유량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하여 검토(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중요 하천만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헌조사 국가측정망 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및 지자체 측정망 및 자체 측정자료를 수집하여 일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환경의 보전 항목의 평가시 본 대상하천이 충청남도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2016.8) 내 중점관리 하천, 호소 수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하천 지자체의 멸종위기종 분포, 야생동·식물 서식현황(해당 시·군 비오톱 지도 참고), 비오톱 등급현황, 국가 및 충청남도 광역생태축을 고려한 해당 하천 산림생태축 및 하천생태축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 및 문헌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향후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 없음

6. 기타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부분의 검토 및 지속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해당 지자체에서 최근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비오톱 지도,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야생동·식물보호실천계획, 습지보전계획, 토양보전계획,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등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 내 제시된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중요지역 및 자원에 대한 보전 및 환경영향 최소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중점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20. 5. .

심의위원 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9조1항, 동법 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다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결정시 해당구간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조치 요망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부 제반 규정에 의거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요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과 관련 기수립된 지방하천 석성천, 온산천, 금천, 구룡촌, 길산천(충남도), 산북천(전북도) 등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하천 관리기관(충남도 및 전북도)과의 사전 협의내용 제시 필요

2. 토지이용구상안

○ 해당 하천구역내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확보와 관련 계획하천 유역에 대한 2019년이후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및 하천 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토지의 변화 내용 제시 요망

○ 과업구역내 환경기초시설외 주요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필요

3. 대안

○ 수리·수문 분석을 통한 하천 제방 설계빈도 적용시 하천등급에 따라 결정하되 인구밀집지역, 상업 및 공업지역, 농경지 등 이용상황을 고려해 하천관리청이 설계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 이와 관련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내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 적용한 내역 제시요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6개 지방하천 유역내 과거 수해피해 현황(발생시기, 발생면적 등)을 정리하여 제시 요망

○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의 신설, 보수 및 보강시 하천관련기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득수리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조치필요(의견 수렴내용 제시 필수)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요소 추출사항중 하천공사 시행시 기존 구조물(교량, 용배수시설 등)철거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콘크리트, 철재류 등)의 친환경적 처리방안과 재활용방안 등 처리대책 제시 요망 (해당 하천 인근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존재 여부 파악 등)

○ 환경질 조사시(2회)시 지표수질 및 하천 저질은 영농기(6월~9월중순)와 비영농기(9월중순~5월)로 구분하여 실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는 신문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외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현수막, SNS 활용 등) 모색요망

○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지역소식지,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해당지역 지자체 읍면 이장단 회의, 타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정기모임(주민교육 등)시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방안 검토

6. 기타

○ -

2021. 5. 14

심의위원 손

양극화 해소,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

충청남도

충 청 남 도

충남형뉴딜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회신(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II권역 및 대청댐+대청댐하류권역)

1. 관련공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4(2021. 4. 27.)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5(2021. 4. 27.)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 4. 27.)호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II권역" 및 "대청댐+대청댐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심의의견서 3부. 끝.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지사인

주무관 유 / 환경협력교육팀장 김 / 환경정책팀장 대결 2021.5.20. 이 /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결

협조자 주무관 주

시행 기후환경정책과-6608 (2021. 5. 20.) 접수 건설관리과-1572 (2021. 5. 20.)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414 팩스번호 041-635-3064 / mryyj@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계획의 공사 및 운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예측, 조사,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보전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 지역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계절별 풍향, 인근 주변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범위는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까지 확대 필요

○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등 대상지역의 범위, 조사지점수, 조사횟수를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의 자연 지형 및 식생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은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고 훼손을 최소화하여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동 계획지구와 주변 생태계가 생태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3. 대안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수단과 방법 등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며,

- 제시된 대안 중 하천 수질 악화 등 수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안은 2개 이상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환경영향을 사전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다양한 하천 생태계 환경 여건[동·식물상, 보전지역, 철새도래지, 인근 지방도·국도 인접 위치, 저수지, 지류 하천, 주변 점·비점오염원, 기존 시설물(이수 시설물, 횡단 시설물), 연계구간 및 합류부 등]에 맞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치수시설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저감 및 보전대책(출연종 보호, 어도설치, 식물상 변화에 대한 대책,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정비사업시 주변지역의 식생변화와 현존 식생도,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동물상 등의 변화 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지난해와 같은 태풍 등 집중호우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시대를 대비한 적정한 설계빈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을 활용하여 평가되어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해당 항목별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조사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의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조사항목은 수질, 대기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을 실시하고, 하천저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야 함.

○ 수질조사는 하천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대기질·소음·진동 측정지점은 주거 밀집지, 학교 등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검토하여야 함.

○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한 수계인지 검토하고,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 및 비점오염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하천 유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구역으로서 오염부하량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의견(사업시행에 따른 발생·삭감·배출계획 등)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수질보전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류유출사고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계획하천 주변에 위치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등을 파악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원 및 하천 수질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질 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15.12.9. 개정)에 따라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목표에 따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고 외 이·통장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관련서류를 비치 열람토록 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동 사업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천구조물 계획시 하천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천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적 변형을 최소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방, 보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여야 함.
○ 계획홍수량의 산정에 이용되는 강우량 등 자료는 최신자료 인용
○ 향후 계획 수립시 어도를 계획할 경우, 서식하는 어종의 특성을 감안한 어도 형식결정이 중요하며 세굴로 인하여 어도와 하상이 이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 국토부), 충청남도 하천기본계획 업무 매뉴얼(2020, 충남도)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2021. 5. 18.

심의위원 김

아름다운 山河 풍비하는 생명의 심터, 천년 전북!

전 라 북 도

전북형뉴딜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제출(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시행 중인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포함한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210511_평가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1부. 끝.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지사의인)

주무관 정 | 자연환경팀장 채 | 자연생태과장 전결 2021. 5. 11. 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518 (2021. 5. 11.) 접수 건설관리과-1509 (2021. 5. 11.)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4173 팩스번호 063-280-4169 / jh0710@korea.kr / 비공개(5)

"하나원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23.5.12~20.), www.apmg2023.kr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

3. 대안
○ 적정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자연현황 조사 시 면밀한 현지조사 실시
○ 동·식물의 서식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조사 실시
○ 대기 및 소음·진동 장소 선정 시 지역주민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온시설(학교, 마을, 축사 등) 위치로 선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전 충분한 사전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민원 발생 방지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11.

심의위원 자연환경팀장 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 · 범위결정이 적정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구상안이 적정함

3. 대안
○ 의견없음(금회 선정된 대안이 적정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금회 제시한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 등이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석성천의 경우 계룡산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필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14.

심의위원 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하천기본계획 하천 중 우리 시 관할 하천은 석성천으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석성천에 영향이 있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석성천 하류부에 금강본류와 연계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분포하므로 대상지역 설정 시 금강본류 구간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석성천의 공간 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3. 대안

○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은 제방축제, 제방보축, 하도준설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호안공법은 친수적 안정성 및 친환경성을 만족되도록 해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중 수질에 대해서는 장래 수질예측에 필요한 지류하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석성천에 영향이 있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 할 수 있도록 주민공람 등 이행 필요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금강본류의 홍수위를 검토하여 지류하천인 석성천이 수해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2021. 5. 10.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하천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수질 등 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하여야 함.

○ 대부분 하천(은산천, 구룡천, 금천, 석성천)이 부여군 관내 위치하는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하천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은산천 시점부 인접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하므로 대상지역 설정 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제방축제, 제방보축, 하도준설 등 개수계획에 대한 충분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대안의 선정이 필요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수환경의보전 항목은 중점항목으로 선정하여 장래수질예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지류하천을 포함한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하천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 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및 이장단회의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주민설명회 시에는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하천구조물 계획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적 변형을 최소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구조물에 의한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함.

2021. 5. 14.

심의위원 노

함께 만들어요. 청렴한 서천

서 천 군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제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4.27.)호와 관련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심의결과서 1부. 끝.

서 천 군 수

주무관 김 환경정책팀장 니 환경보호과장 구 전결 2021.5.4.
협조자 수질관리팀장 장

시행 환경보호과-18069 (2021. 5. 4.) 접수 건설관리과-1439 (2021. 5. 4.)

우 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 www.seocheon.go.kr

전화번호 041-950-4099 팩스번호 041-950-4453 / kgt11903@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합시다.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등이 적정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선정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생태자연도, 서천군 비오톱지도등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대안

○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와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에 대한 비교 검토,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검토를 실시하는등 대안에 대한 선정이 적정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중 개발기본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항목 모두 선정하였고, 평가 범위 및 방법도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본 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할 것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길산천권역, 금강하구 권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협의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함.

2021. 5. 4.

심의위원 서천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장 장

"행복백신, 친절미소"

익산시 **익 산 시** 익산형뉴딜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04.270호와 관련하여 금강공주+금강하구언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1부. 끝.

익 산 시 장 (익산시장인)

환경관리계장 서 환경관리과장 전결2021.5.13. 협조자

시행 환경관리과-8680 (2021. 5. 13.) 접수 건설관리과-1530 (2021. 5. 13.)

우 5458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종합운동장 남문 1층 환경관리과 (부송동) / http://www.iksan.go.kr

전화번호 063-859-7351 팩스번호 063-859-7356 / saisuk10@korea.kr / 비공개(5)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시 수질 및 생태계 등의 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구간에 대한 대상지역 설정 시 수질 및 생태계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여 수질 및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해야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사업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위해 생태계(법정보호종 등)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설정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 참여 유도(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을 이행하여야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14.

심의위원 송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 산 시

수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서 송부(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1366(2021.4.27.)호와 관련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서면심의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1부 끝.

군 산 시 장 (군산시장인)

주무관 인 환경정책계장 홍 환경정책과장 전결2021.5.4.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631 (2021. 5. 4.) 접수 건설관리과-1440 (2021. 5. 4.)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 (조촌동) / www.gunsan.go.kr

전화번호 063-454-3382 팩스번호 063-452-8165 / saytoeye@korea.kr / 대국민 공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하천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대안의 종류 및 선정 의견 : 적절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적절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공사시 주민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021. 5. 3.

심의위원 군산시 환경정책과장 차

환경 영향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 금강하구언1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 총괄 의견
계획 하천 주변에 농가주택과 축사하우스 등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시설을 세밀하게 조사을 해서 피해영향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들과도 본계획을 공감하여 늘 소통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의견
1. 전략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계획 하천주변 농가주택 하우스 축사등이 산재해 있어 영향 예상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심도있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 농가주택 및 축사등이 하천주변에 분포되어 있어 추후 공사시 소음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들과 늘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지편입 등 모든 행정자료를 연람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 기타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의 견 없 음

2021. 5. 14

심의의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철새도래지, 가옥 및 축사 등을 조사하여 영향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 코로나-19를 고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석성천 일대에 철새도래지, 가옥 및 축사 등이 분포하므로 대상지역 설정 시 고려하시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 없음

3. 대안
○ 석성천의 수해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이상강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가옥 및 축사 등이 하천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영향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수렴 시 코로나-19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해당 없음

2021. 5. .

심의위원 유

2021-05-12 17:16 From: 환경보호과수신(0418306500) To : 0314368280 Page.001/00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 · 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14.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Ⅰ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계획은 금강공주와 금강하구언에 1권역에 속한 지방하천 6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충남(5개하천)과 전북(1개 하천)이 대상임. 계획 대상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후 수년이 경과했으며 하천간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상이하여 권역 관리를 위한 수리,수문량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관리운영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또한, 금강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해마다 하류 중심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하천인 금강의 지류인 갑산천 역시 녹조 발생과 낙시꾼이 버린 쓰레기, 쓰레기 투기꾼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 이러한 쓰레기가 금강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 악화 및 금강하구 수문개방시 서천 연안 해양쓰레기 발치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천시 하천 주변지역 축사에서 축분을 하천에 일부 방류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따라서, 금강공주와 금강하구언 1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이를 잘 반영하여 국가 관리 하천인 금강 생태계 보전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효율적 이용, 관리, 보전등의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그 범위설정시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고 수질, 대기, 생활환경, 토양환경, 야생동식물에 대한 영향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관련자료를 통해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구상안과 관련하여 체계적이며 하천 이용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됩니다. 충남의견에 제시한 구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안

○ 본류인 금강과 연결된 지방하천등이 중요한 지방하천에 해당되어 하천의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호안등을 계획함에 있어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해당 하천에 필요한 토지이용 방안들을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움과 동물 생태탐방로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런 금강 지류하천 및 지방하천 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타당성 있는 현지조사 또는 실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금강하구와 금강하구언 1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에 있어 민원 발생이나 피해 발지 또는 지역 농민과 주민들 이해 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관한 의견에 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문서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5 . 12 .

심의위원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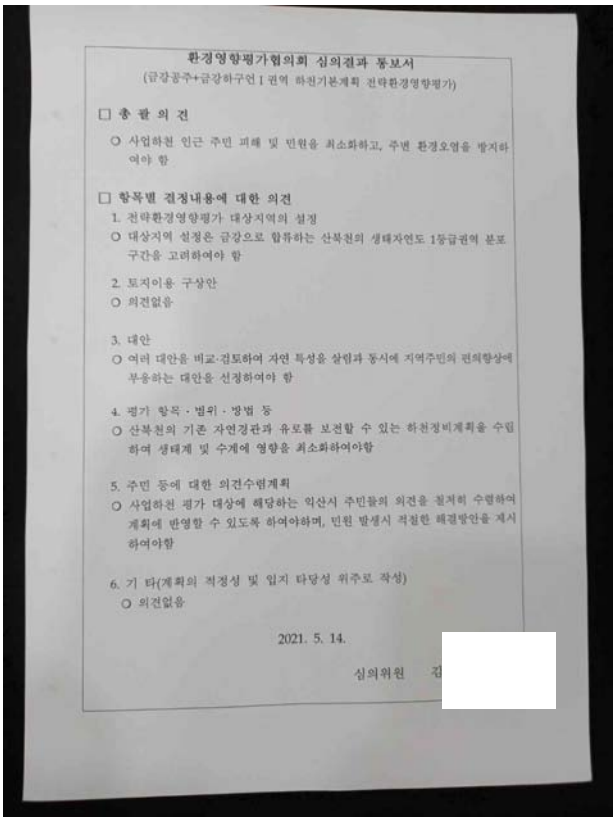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사업하천 인근 주민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금강으로 합류하는 산북천의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본로 구간을 고려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자연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편의향상에 부응하는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산북천의 기존 자연경관과 유로를 보전할 수 있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 및 수계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하천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익산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민원 발생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5. 14.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의 견 없 음"

○ 평가항목 · 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보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14.

심의위원 [illegible]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강공주+금강하구언 I 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 · 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계획 추진과정에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마련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드림.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해 보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에 있어 주변지역 자연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3. 대안

○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공사 시 경관변화나 하천수질 변화로 인한 생태계 타격이 예상되는바 철저하게 환경기준을 높이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필요가 있음.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렴이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많음. 특히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계획 추진 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권리를 묵살할 우려가 매우 높아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장치할 것을 주문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14.

심의위원 [illegible]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총괄의견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 지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대상 지역의 설정에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가 서식 중임으로 최대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2. 토지 이용 구상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3. 대안 표4-4의 제방 공사로 인한 주민의 통행 불편에 대한 대책 필요합니다. 표4-5의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에서, 구체적인 보존 방법과 수·생태계의 영향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4. 표5-1의 하천 공사 시행 시 수생 및 수면 식물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5-3의 평가방법에서 문헌 참고도 중요하지만, 현지 조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주민 의견은 반드시 수렴해야 할 것이며, 법 절차에 따른 형식적 설명이 아닌 진정한 설명이 있어야 향후,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항의 및 반대가 적을 것입니다. 6.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021년 5. 12 심의위원 : 남	
-	-